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,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 부과 등을 위한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(11.15.) -

1. 개 요

▪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「**퇴직연금감독규정**」 **일부개정 고시안**이 **의결**됨('23.11.16.시행)

2. 주요 내용

[1]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

① 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*를 적용하여, 퇴직연금사업자는 非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하게 됨

*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(T+1월)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(T월) 공시할 의무(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)

> 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**
> 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**

② **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** 제조 관행을 **개선**하기 위해 ① **수수료(웃돈) 수취·제공 금지를 명확화**하며, ② **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**에 해당하는 **파생결합사채**에 대해서는 **동일기능-동일규제**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*를 동일하게 적용하고, ③ (원리금보장형) **사모 파생결합사채**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**금지**됨

* 금리 공시의무, 수수료 수취·제공 금지,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

> 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 신설**
> 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3항, 제15조의4 개정**

[2] 퇴직연금 제도별(DB·DC·IRP)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

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·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, **계열회사** 및 **지분법 관계자**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**DC형의** 경우 적립금의 **10 → 20%**로, **IRP**의 경우 **10 → 30%로 상향**

> 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제3항 신설**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②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(ALM*)을 감안하여, **DB형**에 한해 **특수채·지방채**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**30→50%로 상향**

* 자산-부채 매칭(ALM: Asset-Liability Matching) :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(부채)와 퇴직연금 적립금(자산)의 현금흐름을 일치

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개정**

③ 적립금의 100%까지 투자가능한 **'투자위험을 낮춘 상품'**의 범위 관련, ① **채권혼합형펀드**의 **주식 편입 한도**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**40% 이내 → 50% 미만**으로 상향하고, ② 국채·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**RP매수**와 **MMF** 등을 **추가**

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개정**

④ **IRP형**에서"**보증형 실적배당보험***"의 도입근거 마련

*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(주로 펀드)으로 운용하고,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

► **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3 개정**

(원문 링크)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1085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